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325
----------	------

2023년 12월 22일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김춘곤 의원(찬성의원 36명)
- 나. 제 안 일 : 2023년 10월 13일
- 다. 회 부 일 : 2023년 10월 23일
- 라. 상 정 일 :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
2023년 12월 18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춘곤 의원)

가. 제안 이유

- 2023년 6월 5일 '국가보훈처'가 '국가보훈부'로 승격되어 조례의
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
완결성을 높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'국가보훈처장'을 '국가보훈부장관'으로 개정함(안 제36조제1항제7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나. 입법예고(2023. 10. 26. ~ 10. 30.) : 의견 없음.
- 다. 비용추계 : 비대상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가. 조례 개정 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을 현행 법령명으로 일치시키고(띄어쓰기), 최근 정부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며,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입안 체제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세부내용 검토

1) 본 조례 인용 법규 명칭의 현행화(안 제24조, 제26조제5항제14호, 제30조 제1항제1호가목, 제46조)

- 안 제24조 등은 본 조례 4개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명의 띄어쓰기를 현행 법령명으로 일치시키려는 것으로,
 -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, 인용 법규의 제명 개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되었는바, 소관 조례의 완결성 유지를 위한 재무국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< 인용 법규 제명 개정 경과 >

본 개정안 조항	현 조례 인용 법규명칭	개정안	제명 개정 시기
안 제24조	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	「외국인투자■촉진법」	2009.1.30. 일부개정 2009.7.31. 시행
안 제26조제5항제14호	「협동조합기본법」	「협동조합■기본법」	2012.1.26. 제정 2012.12.1. 시행
안 제30조제1항 제1호가목	「조세특례■제한법」	「조세특례제한법」	1998.12.28. 전부개정, 시행
안 제46조	「서울특별시■건축조례」	「서울특별시■건축■조례」	2015.10.8. 일부개정, 시행

< 본 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24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이 조례에 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시설운영자(이하 “외국인투자기업등” 이라 한다)라 함은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. 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④ (생략)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 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 으로 한다. 1. ~ 13. (생략) 14.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⑥·⑦ (생략) 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 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 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. 가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 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. ~ 사. (생략) 2.·3. (생략) ② ~ ⑥ (생략)	제24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 ----- -----. 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----- ----- ----- ⑥·⑦ (현행과 같음) 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. 가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 1항----- ----- 나. ~ 사. (현행과 같음) 2.·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46조(시 건축위원회의 심의)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제46조(시 건축위원회의 심의)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-----.
--	--

2) 정부 직제 개편 사항 반영(안 제36조제1항제7호)

○ 안 제36조는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주택 및 부속토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분할납부(10년 이내 기간)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,

- 「정부조직법」 개정*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여 ‘국가보훈처장’을 ‘국가보훈부장관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* 법률 제19228호, 2023. 3. 4., 일부개정, 2023.6.5. 시행

< 본 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	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	7. ----- ----- 국가보훈부장관----- -----
8. (생략)	8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3) 자치법규 입안 체제 반영(안 제39조의2)

- 안 제39조의2는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부여하고, 현행 제1항부터 제7항을 각각 제2항부터 제8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,
 - 자치법규를 입안할 경우, 본칙은 조(條)로 구분하고,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문을 “항”이나 “호”로 구분하도록 한 자치법규 입안 체제*를 감안할 때,
- *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(법제처) 참조(345쪽)
- 본 개정안 제39조의2의 조 제목 외의 부분에서는 ‘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’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, 이를 별도의 조(條)를 부여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.
- 한편,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에서는,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,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원안가결 의견을 제시*하고 있음.

* [회신]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 검토 회신(재산관리과-12377(2023.10.30.))

< 본 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39조의2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시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」 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39조의2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
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.	①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시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」 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
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 이 되도록 한다 1.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.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3.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.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 및 서기는 재산관리과의 위탁관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및 주사가 된다. ⑥ 심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 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 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---	---

다. 부칙

-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 시기를 ‘공포한 날로부터’로 규정하고 있는바,
 - 본 조례안은 인용 법규 명칭의 띄어쓰기를 현행화하고, 정부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며, 자치법규의 입안 체제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
 - 개정안 시행에 따른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적용례나,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성립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¹⁾.

본 일부개정조례안	
부 칙	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

1) 「행정기본법」 제14조(법 적용의 기준)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.
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. 다만,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.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5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춘곤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32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3일

발 의 자: 김춘곤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
김경훈, 김규남, 김동욱,
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
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 · 석, 박춘선, 박환희,
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
유만희, 윤기섭, 윤영희,
윤종복, 이병윤, 이상욱,
이은림, 임춘대, 최민규,
최유희, 최진혁, 한 · 신,
허 · 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36명)

1. 제안이유

- 2023년 6월 5일 '국가보훈처'가 '국가보훈부'로 승격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'국가보훈처장'을 '국가보훈부장관'으로 개정함.(안 제36조제1항제7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중 “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”를 “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”로 한다.

제26조제5항제14호 중 “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제3호”를 “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제3호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「조세특례 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항”을 “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제7호 중 “국가보훈처장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.

제46조 중 “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 운영자(이하 “외국인투자기업 등”이라 한다)라 함은 「외국인 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9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 다.	제24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외국인 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 호 ----- ----- --.
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④ (생 략)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 1. ~ 13. (생 략) 14.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⑥ · ⑦ (생 략)	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 제3호----- ----- 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 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 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	제30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--- ----- ----- -----

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
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
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
수 있다.

가. 「조세특례 제한법」 제1
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
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
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
인 사업

나. ~ 사. (생략)

2.·3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
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
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
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
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
을 적용한의 이자를 붙여 분할
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7.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아파트,
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
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

-----.

1. -----

-----.

가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
1조의2제1항-----

나. ~ 사. (현행과 같음)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

①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-----

-- 국가보훈부장관-----

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8. (생 략) ②・③ (생 략) 제39조의2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(생 략) 제46조(시 건축위원회의 심의)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----- 8. (현행과 같음)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제39조의2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 ~ ⑧ (현행 제39조의2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) 제46조(시 건축위원회의 심의) -- ----- 「서울특별시 건축조례」----- ----- --.
--	--

문 서 번 호

2023081700000012

비 대 상 사 유 서

요 청 인 : 김춘곤 의원

담 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손제승 주무관

접 수 일 : 2023.08.17.

회 신 일 : 2023.08.21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한 조례안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손제승
	☎ 02-2180-7954
	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